

##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

### 【주 문】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# 【이 유】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#### 1. 인정되는 사실관계

가. 소외 망백○○는 건축공사장에서 문짝, 문틀 등의 페인트도색작업을 하는 페인트공으로서, 약 5년 전부터 페인트 판매 및 도장업체인 (주)○○도장(이하 ○○도장) 소속으로 주로 ○○도장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도록 받은 건축공사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해왔다.

○○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소외 ○○건설(주)(이하 ○○건설) 시공의 ○○빌라 신축공사 중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도록 받아, 망인은 ○○도장 소속 근로자로서 1995. 7. 26. 07:30경 ○○빌라 신축공사장에 첫출근하여 실내 문짝 5개에 대한 페인트 도색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8:3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목이 따르다고 하면서 동료인 소외 차○○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고 옆방에 가서 쉬던 중 그대로 사망하였다.

망인은 사망 당시 62세로서 약간의 고혈압 증세와 무릎 신경통이 있는 외에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으며, 망인의 작업내용은 건축공사장에서 문짝이나 문

틀의 페인트 도색작업 및 청소 등 잡일이었고, 출근시간은 07:30, 퇴근시간은 17:30경이었으며, 사망 전수개월 동안은 한달에 약 25일 정도씩 일하여 왔다.

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김○○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고 사체검안서에 기재하였으나,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을 규명할 바는 없었다.

나.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, 소외 망백○○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,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그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, 나아가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가 62세에 이르고 약간의 고혈압 증세가 있어 망인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,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서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,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○○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○○도장이나 이전에 망인이 일한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의 업무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,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

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.

###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, 망 백○○는 1995.5에는 245일간 (주)○○주택(이하 ○○주택)의 양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및 (주)○○개발(이하 ○○개발)의 ○○패밀리타운 공사장에서, 1995.6에는 27일간 ○○패밀리타운 공사장에서, 1995.7에는 사망 전날까지 25일 중 22일간 ○○패밀리타운 공사장, (주)△△주택(이하 △△주택)의 해운대 공사장 및 ○○개발의 모델하우스 공사장에서 ○○도장이 하도급 받은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여 왔고, 사망일인 1995.7.26 ○○건설의 반도빌라 신축공사장에 첫 출근하여 약 1시간 가량 작업하다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, 위 각 공사는 모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신축공사로 그 공사규모에 비추어 볼 때 각 총공사금액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(1997. 12. 31. 대통령령 제15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4천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,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, 위 각 공사의 일부인 도장공사를 도급 받은 ○○도장의 피용자인 망인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,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업체와 가입범위에 대한 범위 및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자료로 삼을 업무의 범위에 대한 범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,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이전에 근무하였던 ○○주택, ○○개발, △△주택의 각 공사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더라도,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

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.

### 3 상고이유 제2점, 제3점에 대하여

의사김○○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‘급성심근경색증(추정)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다면,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, 기록에 의하면,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페인트공으로서 사망 수개월 전부터 매일 25일 정도씩 ○○주택 등의 건축공사장에서 일하여 왔으나,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며, 망인의 실제 작업시간은 8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, 비록 망인이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,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수개월간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,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.

### 【결론】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